

'88~'89 무공해에너지기술 개발사업 추진현황

〈연재Ⅱ〉

조현덕 / 동력자원부 대체에너지과

3. 향후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대체에너지 개발의 궁극적인 목표는 실용화 보급을 통한 에너지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이라고 볼 때, 우선은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가 선행됨으로서 이의 성과에 대한 보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의 대체에너지개발은 개발초기단계로서 기술개발 지원자금의 절대부족으로 그 개발이 부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실용화 분야가 극히 일부분에 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선진국 수준이상의 보급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및 기술성 부족으로 인한 확대보급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표 3〉 지원정책의 현황

구 분	보 급	기 술 개 발
금 리	석유사업자금 (년리 5%, 3년거치 5년상환)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년리 3%, 3년거치 5년상환)
재 정	-	동자연 출연
세 제	특별상각 (90/100) 또는 세액감면 (10%)	기술개발준비금 # 1 연구 기자재 환세감면
기 타	소수력발전 판매보장 에너지관리공단→교육홍보 및 기술지도	정부우선구매 등 # 2

주) 1, 2 기술개발촉진법상의 지원제도

또한 주요기술 및 제품의 수입의존으로 제도상 지원혜택이 결국에는 외국기업에 상당분 전가되는 문제도 예상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정된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은 우리나라 대체에너지개발의 새로운 장을 열게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기술개발에서 실용화까지의 과정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한다고 볼 때, 첫째로 기술개발추진을 위하여는 현재까지의 미약한 투자와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그동안 다소나마 축적된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체에너지 개발촉진법에 의해 본격적

인 기술개발을 가속화시켜 나갈 것이며, 둘째로 보급촉진을 위하여 선진국 수준 이상의 현지원 제도를 계속 실시함은 물론 기술개발성과에 대하여는 실용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따라 대체에너지 개발촉진법 시행의 초기 년도인 금년에는 소규모이나마 기존의 개발 체제와는 다르게 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소요예산을 처음 반영했다는데 큰 의의를 둘 수 있으며, '88년도 사업비 10억원은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분야등 실용화 근접기술의 조기정착을 위해 산, 학, 연 등을 통해 기술개발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동법에 의한 기본계획, 년차실행계획의 수립과 이의 시행을 위한 소요예산을 십분 확보해 갈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동자부, 과기처, 한전, 동자연 등 대체에너지기술개발에 동원이 가능한 자금별로 적정분야 또는 적정단계의 기술을 개발토록 조정해갈 계획이며, 만일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개발 참여의 부족시에는 법 제 11조의 규정에 의해 에너지관련 산업체에 대한 대체에너지기술개발 투자의 권고를 통해 계획의 목표달성을 기하고자 한다.

나. 자금원별 사업추진 방향

대체에너지기술개발자금은 동력자원부에 관련된 자금내에서도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사업비와 한전 기술개발자금등 재원이 다르므로 이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해당 재원의 특성에 적합한 기술개발을 위해 관계기관과 시행방안을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표 4〉 자원별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부 처 별		재 원	지 원 형태	주요기술개발 내용
동 력 자 원 부	동 자 부 자 체	대체에너지기술 개발사업비	출 연	대체에너지기술개발 종합추진 (취약부문 중점)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이용합리 화기금	응 자	실용화기술 개발
	한국전력 공사	한전연구개발비	자체 또는 위탁	발전분야 중점연구
	동 자 연	동자부 출연금	출 연	대체에너지전반
과 학 기 술 처		특정연구개발사업비	출 연	대체에너지관련 저변기술 및 개발위험성이 높은 장기국책과제
농 촌 진 흥 청		농업기술연구비	출 연	농촌폐기물 관련 바이오에너지 개발

다.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투자권고

연구성과의 적극 보급 및 사업연관성 투자비의 분담등을 감안하여 에너지 관련업체(정유사, 한전, 석공등)에 대해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제 11 조에 의한 기술개발 투자권고를 시행코자하며, 이를 위하여 투자권고 대상기관에 대하여는 기술개발의 수행책임과 아울러 사업화의 우선권을 부여할 예정이며 우선 주요 에너지관련업체를 대상으로 이의 권고를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관련업체에서의 대체에너지기술개발 참여방식으로는 정부에서 권장 또는 지정하는 과

제를 수행하는 방식과 해당업체의 희망과제를 수행토록하는 방식이 있으나 효율적·체계적 기술개발을 위하여는 정부의 장기 기본계획에 부합한 범위는 즉 일정분야를 정부에서 지정하고 업체에서는 그 분야의 해당 범위안에서 과제를 선정, 수행토록 하는 위의 두가지 방식을 절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88 추진계획

위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접수, 신청된 '88~'89 사업계획서는 전문관리기관의 검토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선정할 예정이다.

〈표 5〉 '88~'89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사업 추진일정

구 분	'88 년 도							
	1/4	2/4	3/4			4/4		
			7	8	9	10	11	12
'88~'89년도 실행계획 공고		→						
'88년도 사업계획서 신청 '88년도 사업계획서 검토 의견제출(에너지관리공단→ 동자부)			→	→	→			
'88년도 사업선정					→			
'89년도 사업계획서 신청 '89년도 사업계획서 검토 의견제출			→	→	→	→		
'89년도 사업 선정							→	→

4. 맺는말

우리나라는 석유한방울, 유연탄 한덩어리 생산되지 않고있는 나라이다.

이렇게 자원이 극히 빈약한 토대위에서 안정적·경제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에너지 공급원의 다변화, 무연탄등 국내 부존자원의 최대한 활용 및 에너지 절약과 이용효율 증대 등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경제성장과 국민생활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하여 왔으나, 에너지 공급구조의 취약성을 개선하는데는 한계를 느낄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제정된 대체에너지 개발촉진법 시행으로 국내 총 에너지소비량의 약 46배에 달하는 대체에너지 이용가능량을 최대한 개발, 이용토록 함으로서 단기적으로는 침체되어

있는 대체에너지 산업을 활성화시켜 본격적인 기술개발단계에 진입시킴으로서 다방면의 기술인력과 그간의 축적된 기술을 십분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안정적인 에너지공급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에너지의 해외의존도 감소 및 자주적 공급기반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기술의 대외의존을 극복하고 자주적 기술개발능력을 신장함으로써 후세대의 안정적 성장기반을 마련해주는 촉진제가 되리라 본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에서 공히 근시안적인 안목에서 당장의 투자효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백년대계를 설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會 · 告

本協會에서는 會員社에게 좀더 빠른 정보제공을 위하여 모사전송기(FAX)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인 여러분의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FAX전화번호 : 756 - 6141